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주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78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전주혜·윤창현·김도읍

金炳旭・김정재・이 영

김예지 · 서정숙 · 김미애

윤주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지금까지 신체적 ·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 및 진상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.

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임과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.

이에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모욕·비방·왜곡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

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의 의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 제교류를 추가함(안 제2조의2).
- 나.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함(안 제10조).
- 다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·비방하거나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왜곡·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(안제16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"올바른 역사교육 등을"을 "올바른 역사교육, 지속적인 국제교류 등을"로 한다.

법률 제174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1항 중 "실시하여야한다"를 "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·비방 등의 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·비방 하거나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하여 왜곡·날조 또는 허위사 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
- 2.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
- 3. 문서, 도화, 그 밖에 표현물의 제조·배포
-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·학문, 연구·학설, 시사사건이나 역사의

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국가는 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----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 와 관련한 진상 규명,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 역사교육, 지속적인 국제교류 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등을-----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 보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7440호 일제하 법률 제174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·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 제10조(실태조사) ① -----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 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. ---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6조(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 · 비방 등의 금지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·비방하거나 일본군위 안부 강제 동원에 대하여 왜곡 ·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
- 2.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
- 3. 문서, 도화, 그 밖에 표현물 의 제조·배포
-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·학문, 연구·학설, 시사사건이나 역사 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